

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규정

제정 1996. 8. 14 훈령 제300호
일부개정 2015. 12. 18 훈령 제643호(안양시 훈령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
일괄정비 규정)
전부개정 2017. 10. 17 훈령 제677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(이하 “모니터요원”이라 한다)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월 2회 이상 소비자물가 가격동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물가특별대책 기간에는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정하는 조사 횟수에 따른다.
2.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상황 등 조사
3. 시정의 주요시책 및 소비자보호 시책의 홍보
4.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민·관 합동 행정지도 참여
5. 그 밖에 시장이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모니터요원은 지역상권 등을 고려하여 22명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촉) 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실정에 밝아 물가조사활동, 정보수집, 홍보활동 등 지역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
2.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사람
3. 그 밖에 소비자단체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임기)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 해제)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
2.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
3. 건강,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임무 수행 중 민원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
5.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7조(모니터요원증의 발급 등) ① 시장은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표의 모니터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모니터요원이 모니터요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가모니터요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모니터요원증을 발급 및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물가모니터요원증 발급대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모니터요원은 물가조사 활동 시 모니터요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위촉 해제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비변상) 시장은 모니터요원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 <2017. 10. 17 훈령 제677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대한 적용례) 이 규정 시행 당시 모니터요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모니터요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물가모니터요원증 (제7조 관련)

(앞 면)

8.5cm	2	 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증
	4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100px; margin: 0 auto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진 (3.5cm×4.5cm) 여권형</p> </div>
	1	(성명)
	1.5	안 양 시
		5.5cm

(뒷 면)

(발급번호 No.)
<p>성 명 생년월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의 사람은 「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규정」 제7조에 따른 “물가모니터요원” 임을 증명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 안 양 시 장 (직인) 이 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안 양 시

[비고]

1. 바탕색상은 흰색으로 한다.
2. 재질은 PVC로 한다.
3. 사진은 여권형(3.5cm × 4.5cm)로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물가모니터요원증 재발급신청서

1. 성 명:

2. 생 년 월 일:

3. 재발급신청사유:

붙임: 여권형(3.5cm × 4.5cm) 사진 1매

「안양시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및 운영 규정」 제7조제2항에 따라
위와 같이 물가모니터요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물가모니터요원증 발급대장

결 제			발급 번호	발 급 년월일	주 소	성명	생년월일	발급 사유	회 또 재교부	수 는 부	폐기 일자 및 사유	사 진
과 장	팀 장	담 당자										

